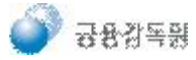


	보 도 자 료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9.6.(월)	
책 임 자	금유위 FIU 기획협력팀장 전 은 주(02-2100-1720)	담 당 자	김 영 준 사무관 (02-2100-1722)		
	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이 길 성(02-3145-7500)		박 상 현 팀장 (02-3145-7502)		

제 목 : 신고를 준비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I 신고설명회 개요

-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(FIU)과 금융감독원은 9월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고관련 주요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.
- 「특정금융정보법」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신고준비를 지원하고,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.

<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설명회 개최 개요>

- (일시·장소) : '21.9.6.(월) 15:00~ / 영상회의
- (참석대상) : ISMS 인증획득·심사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30여곳
- (주관) :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(FIU) 기획행정실
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
- (주요내용) : ①가상자산사업자 신고·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
②신고접수후부터 신고수리전까지 준비 필요사항
②가상자산사업자 신고관련 질의응답

※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수가 많고, 매우 많은 일반 국민들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,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함
 - 가상자산보관·관리업자, 지갑사업자 등 여타 사업자들은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FIU·금감원 문의하는 경우 안내하고 있음

1. 신고 접수 전 (~9월 24일)

가.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리 진행

- ☐ 원화마켓*을 종료하고 코인마켓*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.

※ (원화마켓) 원화,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를 중개

(코인마켓)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을 중개

-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신고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* 신고심사 완료전 이용자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

나.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시에는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

- ☐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,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*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합니다.

* 영업종료시 이용자 지원절차 수립을 마련하도록 권고(금감원, 8.18.)

- ①영업종료 사전 공지, ②입금종료 및 예치금·가상자산 출금 안내, ③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.

<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종료시 주요 필요조치 권고사항>

① (영업종료 공지)	·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고객에 공지·개별 통지
② (입출금 종료)	·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,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
③ (정보 파기)	· 영업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

➡ 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는 늦어도 **9.17일까지**는 이용자에게 **영업종료**를 공지하고, **9.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**해야 합니다.

※ 즉, 코인마켓만 운영할 사업자는 원화마켓을 9월 24일까지 반드시 종료

2. 신고 접수 후 (9월 25일~)

가. 금융정보분석원(FIU) · 금감원의 신고심사에 대한 원활한 협조 요청

- 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, 신고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.
-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, 다크코인*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.
- *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가상자산의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
- ☐ 신고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, 연락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.

나.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준비 및 이행

- ☐ 신고접수 후에는 「특정금융정보법」, 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
- 고객확인(CDD), 의심거래보고(STR)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.

3. 신고 수리 후

- ☐ FIU는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·감독할 계획*입니다.

* FIU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위한 조직신설 추진중("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", 금융위-행안부 공동 보도자료 8.28.)

➡ 가상자산사업자는 **신고수리 후 「특정금융정보법」상 의무를 즉시 이행**해야하며, **FIU로부터 상시적인 관리·감독**을 받게 됩니다.

-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'21.9.24.까지 약 3주 밖에 남지 않아
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·
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
- 이용자께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·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
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, 폐업·영업중단 공지
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- 필요한 경우, 사전에 예치금·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
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·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·지연
하거나,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,
- 금융정보분석원(☎02-2100-1735), 금융감독원(☎02-3145-7504), 경찰
(☎112 또는 관할경찰관서)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※ 가상자산취급업소는 일부 영업종료(예 : 원화마켓)를 하거나, 미신고 또는 신고 불수리 등으로 전부 영업종료를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내용을 반영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, 필요시 그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, 모바일 App. 또는 전화·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함

① 영업종료 관련 공지

- 일부 영업종료 결정, 미신고 결정, 신고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발생시 회원에게 동 사실과 이용자 안내사항 등을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(FAQ 등 포함)
- 공지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, 모바일 App.에 게시
- 개별 회원(휴면회원 포함)에게 전화, SMS,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지내용 안내
- 공지는 영업종료가 확정된 시점에 즉시 이행

② 이용자의 신규 거래 및 신규 회원가입 종료

- 영업종료 공지 직후 신규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중단
- 영업종료 공지 직후 관련 신규 회원가입 중단

③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

- 영업종료 직후 이용자 예치금 및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보존조치
-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他취급업소 또는 개인지갑으로 출금(이전)을 적극 지원
- 이용자 예치금의 출금(이체) 적극 지원
-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(이전, 이체) 미요구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 안내
- 이용자 소유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(이전, 이체)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통해 지원

※ 취급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시 최소 7일 이상의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고, 거래지원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(이전, 이체)을 지원

④ 기타

-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발생시 구제 절차 마련
-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코인에 대한 처리방법 안내(코인 발행회사와의 협의내용, 발행회사 연락처 등 포함)
- 일정기간 경과 후 미출금된 이용자자산에 관한 처리 절차 마련(공탁, 他취급업소에 양도, 가상자산 수탁기관 이전 등 포함)
- 회원정보의 파기 방법 마련
- 영업종료로 인한 인터넷홈페이지 폐쇄 등에 대비한 고객센터 등 연락처 (전화번호, 이메일) 안내